



LEGAL UPDATE
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4-1호

Feb. 2024

보험 정책 동향

-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
책무구조도 세부 내용 등 마련을 위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 변경 예고 (2.13.) -

1.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'지배구조법」 개정(24.1.2일 공포, '24.7.3일 시행)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**시행령 및 감독규정(고시)**에 대한 **입법예고·규정변경예고**를 실시

2. 주요 내용

[1]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

-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**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**
- 금융회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("책무기술서")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("책무체계도")를 작성하여 **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** 이내 금융당국에 **제출**해야 함
-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(이하 "내부통제등") 책임을 의미
- 금융회사의 업무는 ①준법감시,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·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, ②여신,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·겸영·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, ③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하고,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
-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(이하 "내부통제 기준등")을 마련해야 하며, 해당 내부통제기준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,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,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함

<업무 예시 (시행령 별표 1의2 일부)>

구분	① 책임자를 지정하여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	②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	③ 경영관리 관련 업무
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내부통제등 총괄관리 ·내부감사 ·준법감시 ·위험관리 ·자금세탁방지 ·정보보안 ·내부회계관리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여신수신 ·투자매매·중개 ·집합투자 ·신탁 ·보험계약체결인수 ·신용카드업 ·연금(개인연금, 퇴직연금)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인사·교육 ·보수 ·고유자산운용 ·건전성 관리 ·업무위수탁 ·자회사 관리 ·광고 등

※ 업무는 예시로 열거하고,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마련시 예시 업무를 각 회사별 조직,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작성

[2]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규율

-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하여,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·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함
 -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·지주·금투(자산 5조원 이상 등)·보험(자산 5조원 이상)을 제외한 금투(자산 5조원 미만 등)·보험(자산 5조원 미만)·여전(자산 5조원 이상)·저축은행(자산 7천억원 이상)은 법 시행일인 '24.7.31 이후 2년까지,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함
 -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,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·공시·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됨

<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>

은행	지주	금투	보험	여전	저축은행
전체	전체	자산총액 5조원 ↑ / 운용재산 20조원 ↑ + 종금사	자산총액 5조원 ↑	자산총액 5조원 ↑	자산총액 7천억 ↑
		자산총액 5조원 ↓ / 운용재산 20조원 ↓	자산총액 5조원 ↓	자산총액 5조원 ↓	자산총액 7천억 ↓

* □ 1단계(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) → □ 2단계(1년) → □ 3단계(2년) → □ 4단계(3년)

[3]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규율

-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하며,
 -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,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도 점검해야 함

[4] 주요 규정 정리

- ① **내부통제 관리의무 관련 사항:**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되는 임원과 포함되는 직원을 규정

▶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2, 동법 감독규정 개정안 제14조의2

- ② **책무구조도 관련 사항:**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나누어 예시와 함께 규정하고 책무구조도 작성방법, 제출방법 등을 규정

▶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3, 별표 1의2, 동법 감독규정 개정안 제14조의3

- ③ **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관련 사항:**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세부사항을 규정

▶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4

- ④ **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:** 내부통제위원회 업무중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

▶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17조의2

3. 향후 계획

-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**2.13일(화)부터 3.25일(월)까지 입법예고·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**이며,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,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·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**'24.7.3일부터 시행될 예정**

(원문 링크)

<https://www.fss.or.kr/fss/bbs/B0000188/view.do?nttid=133750&menuNo=200218>

<https://www.moleg.go.kr/lawinfo/makingInfo.mo?lawSeq=76736&lawCd=08&lawType=TYPE5&mid=a10104010000>